

소방의 날 변역(變易) 필요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우성천**, 채진***

기념일이란 정부가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축하하거나 기릴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말하며, 각 기관에서는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함으로서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1월 9일 제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한 기념행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써 유의미한 날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의 날이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왜, 무엇을 기념하기위해서 제정되었나를 재조명 해 보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모든 국가기념일(법정기념일)이나 다른 나라의 소방 기념일처럼 유의미한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소방의 날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소방의 날에 부합되는 기념일을 모색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소방의 날 변역(變易)의 필요성과 새로운 소방의 날을 제언(提言)하였다. 각 가관별 국가별소방의 날 제정에는 그 기관단체 국가별로 기념할 만 한 객관적인 이유와 동기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우리나라의 소방의 날은 단지 긴급전화번호가 119라는 이유만으로 그 날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숙된 소방조직으로서 새로운 소방의 날은 먼저 소방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사용된 날, 두번째로 우리나라 소방조직(관아)이 처음 창설된 날, 세 번째로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날 등으로 변역되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주제어: 기념일, 소방의 날,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국가기념일

1. 서론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계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서 법정기념일이나 국가기념일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이다. 우선 2012년 11월 9일 제50주년 소방의 날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의 날 유래는 50년 전부터 전 소방공무원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防火日)로 정하여 각종 화재

* 본 연구는 2013년도 교원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강원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대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소방협회에서는 방화일에는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2일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시작된 기원은 확실치는 않으나 1930년도 방화일 계획은 오늘날 소방의 날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히 방화강조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방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방화일 행사와 비슷한 것으로 1920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것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실시된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난날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정부가 수립되고 소방행정이 제도화 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었고 소방의 날의 기원이 된 행사도 함께 거행되었다.

그즈음 소방인들 사이에서는 소방의 날을 법제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매년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성과로 1967년 1월 6일에는 「불조심의 날」이 제정되었다.

또한 소방의 날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어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된 총무처 소관의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삽입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법정기념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서 자체 행사로만 실시되었으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방의 날』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매년 행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첫째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여 국민적인 행사가 아닌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진행되었고 둘째로 행사일인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 그 해의 행사가 몇 번째 행사인지 불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용치 않아 행사의 일관성조차 희박하였다. 그러므로 소방인들 사이에서는 소방의 날을 제정하여 전 소방인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들도 공감을 가졌으며 이를 1991년 소방법 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기념일로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어도 ‘소방의 날’은 이때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1991년부터는 11월 1일 이었던 소방의 날을 11월 9일로 번역하여 전 소방인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내용을 다양화하고, 1963년도 행사를 1주년으로 역산해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의 날 번역 필요성에 있어 우선 소방의 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소방의 날에 부합되는 날(기념일)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의 날 번역필요성과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소방의 날 번역필요성을 제언(提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소방의 날의 이론적 고찰

1. 소방의 의의

1) 소방의 정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재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활동하면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태만히 한다면 스스로 재난·재해를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인류공존의 대의에 배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간의 일상생활을 안정케 하는 데에 전 국민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매진해야 한다.

소방이란 단순히 협의적 의미로 보면 화재를 경계하여 불난 것을 끄며 연소를 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소방이란 화재예방과 경계·화재진압과 기타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 소방이란 불을 끄는 정도로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듯 광범위하고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방이란 광의적으로 보면 연소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의 토대위에서 각종 조사를 행하여 화재예방 및 경계를 실제화재시의 화재대응 수단과 소방전술의 연구 그리고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소방행정의 진의는 화재의 진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경찰이 경찰제도의 주안(主眼)이듯이 예방소방과 구조·구급 업무가 중심이어야 할 것이다.

2) 소방의 날 유래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 정부에서 설정되어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단위의 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 이라고 하여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불조심 가두 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일」로 정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주년(周年)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1962년까지의 행사를 하나로 묶고 지역단위 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하고 1991년부터 행사명칭을 「제29주년 소방의 날」 행사로 통일하였다.

1999년 제 37주년 기념식부터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주관하에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거행하였고 2012년 제 50주년 기념식은 올림픽 공원 내 제3체육관에서 거행되어 모름지기 소방의 날도 국가적인 기념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소방의 날 변천과정

소방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소방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로써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9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모든 소방인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중의 대국민 불조심 계몽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일제시대에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防火日)」로 정하여 불조심에 대한 각종 행사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거행하였다.

1) 제1기(1963년~1975년)

일제시대 초기에는 겨울철을 맞아 경무총감부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고 주민을 계도하였는데 대부분 화기취급시의 유의점을 강조하고 소방시설(소화기구)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와 소방협회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일과 2일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방화일이 시작된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1930년도 방화일 계획은 오늘날 소방의 날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기적 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방화강조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방화운동을 전개 하였던 것이 예전의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불조심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에는 대대적인 불조심행사가 시작되었는데 행사의 명칭을 소방의 날 이나 불조심대회 등으로 불렀다.

2) 제2기(1976년~1990년)

1975년 자유진영국가인 월남과 크메르가 멸망하면서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소방업무의 소관이 치안국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소방국으로 승격, 이관되었다(행정자치부 소방국, 1999. 88).

이것은 전국 소방관계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로 1976년 불조심 강조기간부터는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계획을 중앙에서 수립, 시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11월 1일로 정착된 소방의 날 행사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었으나 기념식 명칭은 불조심대회나 소방의 날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제3기(1991년~현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 가졌음에도 소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첫째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여 국민적인 행사가 아닌 자체 시·군 기념행사로 진행되었고 둘째로 행사날인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소방의 날로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 그 해의 행사가 몇 번째 행사인지 불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아서 행사의 일관성조차 희박하였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11월 1일보다는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해서 전체 소방인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공감을 가졌으며 1991년 소방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3 우리나라 기관별 기념일

1)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이란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국가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법정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附隨)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 행사의 절차·규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국가기념일은 각 부처에서 부령·훈령 등에 의하여 제정·시행함으로써 한때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생겨 많은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유사기념일의 통·폐합 및 행사간소화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을 축소·조정하였다.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을 기준으로, 법정기념일은 <표 1> 및 <표 3>과 같이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 등 45개이고 소방의 날, 방재의 날, 사회복지의 날 등 10개는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각종 법정 기념일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납세자의 날	3월 3일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15의거기념일	3월 15일	국가보훈처	3.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식목일	4월 5일	농림수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보건의 날	4월 7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기념일	4월 13일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4.19혁명기념일	4월 19일	국가보훈처	4.19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과학의 날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법의 날	4월 25일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충무공 탄신일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어린이 날	5월 5일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어버이 날	5월 8일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스승의 날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 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5월 18일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부부의 날	5월 21일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바다의 날	5월 31일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각종 법정 기념일(계속)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의병의 날	6월 1일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현충일	6월 6일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 10일	행정안전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6.25 사변일	6월 25일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돋우는 행사를 한다.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철도의 날	9월 18일	국토해양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국군의 날	10월 1일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노인의 날	10월 2일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체육의 날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 잡지 ·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경찰의 날	10월 21일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교정의 날	10월 28일	법무부	교정(矯正)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복돋우고, 저축 · 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소비자의 날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각종 법정 기념일(계속)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
무역의 날	12월 5일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이상과 같이 45개의 법정기념일을 살펴보고 그 중 소방공무원과 같이 제복과 계급을 착용하는 군인·경찰·해양경찰·교도관 등을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통군대가 상비군으로 바뀌면서 체제를 갖추나간 반면에 우리나라 육·해·공군은 미군정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각기 발전하여 통합되었다. 육군이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출발했다면 해군의 연원은 미 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서 찾을 수 있고,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 왔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침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 공포하였고 같은 해 9월 21일 대통령령 제 1173호가 공포되어 1956년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실시되었다.

1950년 10월 1일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우리 국군이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2) 경찰의 날

경찰의 날은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 날은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경찰 창립을 기념하는 날로서 경찰의 날을 매년 10월 21로 한 것은 광복 후 인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산하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 경찰로 발족한 이래 매년 10월 21일을 국립경찰 창설일로 기념하여 왔기 때문이다.

1973년 3월 30일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정해졌고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경찰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기념행사를 가진

다.

(3) 해양경찰의 날

한국 해양경찰청은 1953년 평화선침범 외국어선 단속, 어업자원 보호, 해상치안을 목적으로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로 출발한 이래 매년 경찰의 날에 일반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져왔으나, 1955년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항로표지 업무가 추가되었다.

이후 1962년에는 당시 내무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1년에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되었다가 1998년에는 해양수산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되었으며,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을 독자적인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날 기념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4) 교정의 날

법무부 주관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서 매년 10월 28일이다.

이 날을 교정의 날로 지정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하며 교정의 날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기념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것인데 교정의 날처럼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경우는 과거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재소자 처우의 개선 요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은 격무,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저해와 같은 이유로 자기 비하적 의식이 87.2%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의 제정 이었다.

국군의 날, 해양경찰의 날, 교정의 날 등 기념일 및 제정동기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의 기념일 및 제정동기 요약

구분	기념일	제정 동기 및 요약	비고
국군의 날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의 위용과 국군장병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1950년 10월1일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 ◦ 1956년 10월 1일부터 행사 실시 	법정 기념일
경찰의 날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하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 경찰로 발족한 이래 창설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 	법정 기념일
해양경찰의 날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발 1998년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으로 승격되었고 12월 23일을 독자적인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함 	법정 기념일
교정의 날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정 ◦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행정업무 전반을 인수한 날 	법정 기념일

2)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

기념일에는 각 기관과 단체별 기념행사를 통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하게 되는데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의 절차, 규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 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데 소방의 날과 방재의 날 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10개의 기념일이 있다.

<표 3>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

기념일	날짜	주관부서	제정 동기
입양의 날	5월 11일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 함
가정의 날	5월 15일	여성가족부	1994년 UN총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평화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선포 함
발명의 날	5월 19일	과학기술부	발명사상을 앙양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 함.
세계인의 날	5월 20일	법무부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 함
방재의 날	5월 25일	법무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 함.
태권도의 날	9월 4일	문화관광부	이 날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된 날로 이를 기념 및 태권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정함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 함. 즉 정부가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 봉사자 후원자 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서 범 사회복지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함
임산부의 날	10월10일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함

<표 3>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계속)

기념일	날짜	주관부서	제정동기
소방의 날	11월 9일	소방방재청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정함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안전행정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어의적 개념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현하는 이타활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유래함

(1)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전 소방인과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 중의 대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겨울철을 맞아 경무총감부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고 각 관아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을 계도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소방협회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2일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시작된 기원은 확실치는 않으나 1930년도 방화일 계획은 오늘날 소방의 날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히 방화강조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방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방화일 행사와 비슷한 것으로 1920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것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실시된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오늘날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광복과 함께 정부가 수립되고 소방행정이 제도화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었고 소방의 날의 기원이 된 행사도 함께 거행되었다.

이때부터 소방인들 사이에서는 소방의 날을 법제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매년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불조심생활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성과로 1967년 1월 6일에는 내무부예규 제113호로 불조심의 날(1977년 8월 5일 폐지)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보다 행사내용이 내실을 갖춰 소방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최초로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소방업무의 소관이 치안국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승격·이관되었으며 다음해인 1976년 불조심 강조기간부터는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을 중앙에서 수립·시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해서 전 소방인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는 정부관계자들도 공감을 하였으며 1991년 소방법 개정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기념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어도 '소방의 날'은 이때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2) 방재의 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서 1994년부터 매 년 5월 25일에 기념행사를 치르며 안전행정부가 주관부처로서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지역재해대책본부에서 방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UN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 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 각 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UN 가입과 함께 다각적인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각종 방재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IDNDR¹⁾에서 권고한 세계재해 경감의 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1994년부터 재해 예방책 차원에서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방재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전문 제정에 따라 동 법 제 23조에 명시하였다.

(3) 발명의 날

1957년 우리나라 정부는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인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였다. 측우기는 조선 세종때 장영실이 발명한 강우량 측정기구로서 세계최초로 만들어졌다.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는 그 원리에 있어서 오늘날의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세종 즉위 23년인 1441년 5월 19일 세종은 측우기를 각 지방으로 내려 보내 측우기의 발명을 공식 선언했다.

(4)태권도의 날

태권도의 날은 세계 태권도인들 간에 단결과 태권도인의 위상강화를 위해 2006년 7월 25일 베트남 호치민시 에콰토리얼 호텔에서 열린 WTF(세계 태권도 연맹) 정기총회에서 매 년 9월 4일로 정한 날이다. 이날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03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체결된 날로 WTF는 앞으로 이를 기념하고 태권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1) IDNDR: 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방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25일.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1991~1999) 계획기간(IDNDR)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 각국에 권고 하였다. 이에 미국, 호주, 인도, 중국, 영국, 태국, 프랑스, 독일,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이 동참하였다. 1991년 9월 17일 우리나라의 유엔가입과 함께 다각적인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각종 방재정책 기능강화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0년 IDNDR(국제 재해경감 10개년 계획)에서 권고된 세계 재해경감의 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994년부터 재해예방책 차원에서 우기철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전문 제정에 따라 법적(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으로 명시하였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방재행정세미나, 방재시범훈련, 재해 예방 캠페인,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정비, 재해참상 및 복구 관경 사진전시회,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다채로운 재해예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태권도 진흥 및 공헌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됐다.

4 세계 각국의 소방기념일

우리나라가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것처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소방영웅을 기념하고 화재로부터 교훈을 되새겨 각성코자 소방기념일(소방의날, 소방선전일 등)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일본은 스이코왕의 아들 쇼토쿠가 601-607년에 세웠다고 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목조건물인 법륭사(法隆寺)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1949년 1월 26일을 “문물방화절”로 정하게 되었다.

이 절은 일본 나라현 반구리에 소재하는 사찰로서 경전에 소장되었던 일본의 국보인 12폭 벽화가 소실되었는데 불당내에 켜놓은 형광등에 의해 주변 가연물이 탄화되면서 말화되었다.

그래서 매년 1월 26일 문물방화절이 되면 일본 전역의 문화유적시설에서는 대대적인 화재예방 홍보와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실시, 가연물 청소 등 화재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찰의 승려들과 직원들은 방화활동과 제사 불경낭송등의 활동을 하고 소방대원들은 사찰과 경내(境內)에 고가 사다리차들을 전개하여 방수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2) 중국

중국은 1992년公安部에서 매년 11월 9일을 소방선전일로 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동절기가 되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이 날을 119 소방선전일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중국의 화재신고 전화는 09였는데 이는 1970년대 이전 중국의 긴급특별전화는 0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그 이후부터는 통신 서비스 번호가 11로 개편되면서 그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따라 화재신고 전화번호도 119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중국어 발음 야오야오지우(要要求)를 음역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11월 9일이 중국의 소방기념일(소방선전일)로 되었다.

3) 미국

미국의 소방의 날은 Fire Prevention Day라고 하며 10월 9일 이다. 1871년 10월 8일 밤9시에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는 다음 날(10월9일) 밤 11시까지 계속되며 도시의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소방의 날은 시카고 대화재를 기억하기 위한 화재 예방주간의 한 행사로 지켜진다.

시카고 대화재는 9km²에 이르는 시카고 중심가를 태우며 18,000호의 가옥과 300명의 사망자,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 화재로 14주간이나 계속 된 가뭄 끝에 온 심한 건조한 바람속에 더욱 큰 피해를 주었다. 시카고는 이때의 대화재를 계기로 시가지를 다시 건설하고 건축자재도 목재에서 내화성이 좋은 철골구조물로 대체되었다.

대화재 이후 새로운 건축물 고층건물들이 들어섰으며 결과적으로 시카고 대화재를 계기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때부터 10월 9일이 소방의 날(Fire Prevention Day)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로마제국

매년 8월 22일은 고대 로마인의 발칸절로서 소방 기념일이다. 로마는 세계문화의 발원지이면서 동시에 각종의 건축물들은 가히 세계 제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기 64년 로마 대화재가 최초로 발생하여 6일 동안 불에 탔고 서기 80년에 다시한번 몰아친 대형 화재에 의해 고대 도시 로마는 다시 3일 동안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서기 390년 엄청난 대화재로 인해 도시는 재난의 잔해로 남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로마 초기의 건축물과 문서, 문화유산인 서적들이 불에 타 버렸다.

당시 고대 로마 시에서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발칸이라는 화신을 두었는데 이는 모든 재난을 발칸이 주재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매년 8월 22일을 발칸절이라 하며 모닥불을 지피고 물고기 등의 제물을 바치면서 발칸에게 화재를 면하도록 기도했다고 한다.

5) 유럽 각국의 소방 기념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소방기념일은 매년 5월 4일이다. 서기 1184년 5월 4일 고대 로마의 군장관 플로리안(Florian)은 기독교를 전파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어 강물에 수장되었다. 그 후 플로리안 장군의 유해는 폴란드 크라코프(Krakow)의 교회로 옮겨진 후 신성시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1528년 4월 24일 그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고 도시의 대다수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으나 플로리안의 유해가 보존되었던 교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이때부터 플로리안의 유해가 영적인 힘을 발현하여 화재로부터 살아남게 한다는 전설을 낳았고 이후 그의 이름은 소방의 상징처럼 되어 그가 처형되었던 날은 소방관들의 기념일로 추앙되는 한 편 플로리안은 불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소방의 날과 제정동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국가별 소방의 날 제정동기

국가별	소방의 날	제 정 동 기	비 고
일본	1월 26일 (문물방화절)	◦세계최초의 초대형 목조건물인 법흥사 화재를 교훈으로 삼고자 제정	서기601-607년에 건립된 사찰
중국	11월 9일 (소방선전일)	◦1992년부터 소방선전일로 발표 ◦동절기가 되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제정함	최초 화재신고 전화는 09였는데 통신서비스 번호가 11로 개편되면서 119로 바뀌게 됨
미국	10월 9일 (소방의 날)	◦시카고 대화재(1971.10.8~10.9)를 계기로 시가지를 다시 건설하고 건축자재도 목조에서 철골구조로 대체되었으며 새로운 고층건축물 등이 들어섬 ◦대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제정의 계기가 됨	시카고 대화재는 9km ² 소실과 18,000호의 가옥, 300만 명의 사상자, 10만 명의 이재민 발생
로마	8월 22일 (발칸절)	◦고대 로마인의 발칸절로서 소방 기념일 ◦64년 로마대화재(6일간 연소) ◦80년 로마대화재(3일간 연소) ◦390년 대화재로 로마초기의 건축물과 문서, 문화유산, 서적 등 소실	고대 로마 시에서는 모든 재난을 발칸이 주재한다는 의미와 화재를 피하기 위해 발칸이라는 화신을 둠
유럽 각국 (폴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5월 4일 (소방기념일)	◦서기 1184년 5월 4일 플로리안이 기독교를 전파하였다는 죄명으로 강물에 수장됨 ◦그 후 유해를 크라코프교회로 옮겨 신성시 함 ◦1528년 4월 24일 대형화재 발생 그러나 그 교회는 피해 없이 보존 ◦그가 처형되었던 날은 소방관들의 기념일로 추앙	플로리안은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됨

III. 소방의 날 제정 유래 및 쟁점

1. 소방의 날 제정 유래

1) 방화일 행사

이 행사의 시작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각종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조선총독부 경찰국과 소방협회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에 따라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작 시기는 1930년 방화일 행사계획을 보면 <표 5>와 같다(행정자치부 소방국, 1999: 64-65).

<표 5> 1930년 방화일 행사계획

제목	내용	비고
지령봉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중 소방조 비상소집 ° 지령봉독 방화기원제 등 집행 	
선전방법의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에 의한 선전 ° 옥외강연 및 방어, 피난연습의 실시 ° 흥행장 및 백화점에 대한 선전 ° 소방음악회 기타 음악에 의한 선전 ° 라디오에 의한 선전 ° 방화강연회 및 활동사진 ° 포스터에 의한 선전 ° 소방차 기타 자동차에 의한 선전 	선전홍보 흥행장 백화점
소방조와 활동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 소화기 및 비상구 등의 일제조사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의 활동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취급소 일제검사 °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일제검사 	
피난연습, 방화강화, 시가행진 방화전람회 등		

※ 방화일 행사내용은 본 연구자가 표로 작성한 것임.

2) 소방의 날 또는 불조심대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동안의 방화일 행사는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 지역단위의 행사이기도 했지만 행사명칭이 “소방의 날” 또는 “불조심대회”라고 하여 유공자포장, 가두캠페인, 불조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방이 경찰행정의 일부이던 시절로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가려 독자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63년도에 불조심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3) 불조심의 날

1967년 내무부예규로 불조심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73년엔 기념우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가 1977년에 폐지되었다.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맞아 11월부터 다음해 4월 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5일을 불조심의 날로 정하고 가가호호마다 불조심의 중요성과 불조심운동을

널리 홍보하였다. 특히 6개월 동안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실정 하에 “불조심의 날”을 정한 것이며 이 기간에는 지금까지 형식상의 불조심 운동을 떠나 더욱 철저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홍보내용 중에는 오늘(15일)은 경찰에서 방화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설정한 첫 불조심의 날이며 치안국에서는 이날을 맞아 항공기 편으로 불조심 “빠라” 살포, 각 급 학교 및 직장별로 불조심에 대한 훈화, 일반 소방용 기계·기구 점검 및 정비,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소 및 취급상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조심에 대해 각별히 홍보를 하였다.

4) 소방의 날(11월 1일 및 11월 9일)

소방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강조기간을 정하여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에 소방의 날이라 하여 유공자 표창, 소방차 카피레이드, 불조심 캠페인 같은 소방의 날 또는 불조심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 후 1963년부터 1991년 소방법개정 전까지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으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지역별로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던 행사가 “소방의 날”로 명칭이 통일된 1991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시작된 1963년을 역산하여 제1주년 소방의 날로 시작된 것이 2012년에 “제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소방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50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교정의 날 등은 모두 법정기념일인데 반해 소방의 날은 아직도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인 것이다.

2. 소방의 날 제정의 쟁점

1) 119 와 소방의 날 제정 분석

(1) 119

화재와 구조·구급 신고는 119 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면서 왜 119번일까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119번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도입 하였다는 정도 밖에는 더 이상 깊이 연구하는 소방관련 연구자들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화재신고가 긴급전화로 사용된 동기는 역사적으로 1910년부터 일제 침략시기에 소방문물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발전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전화발달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관동대지진²⁾을 계기로 자동식(다이얼식) 전화가 추진되어

2)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시즈오카(靜岡)·야마나시(山梨)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서 12만 가구의 집이

1926년 동경 교토 전화국에서 처음으로 사용, 다이얼 돌리는 시간이 짧은 112번으로 결정 되었으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접속이 많아 1927년부터는 긴급전화로 사용되지 않는 9를 사용하여 119번이 탄생되었다(스포츠 조선, 2007).

1934년 당시는 수동식 전화체제로 교환원이 교환을 해 주는 시스템이었으므로 불이 났을 때 화재라고 신고하면 소방서로 연결되며 공중전화에서도 요금은 필요치 않다는 내용을 종합해 불 때 우리나라에서 자동식 전화 도입은 경성 중앙 전화국 교환방식이 1935년 10월 1일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번호를 개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식 전화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면서 119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2)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은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서 현재는 매년 11월 9일 이었으나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11월 9일이 아니라 12월 1일, 11월 1일 또는 1월 1일 등 여러 변천과정을 거쳐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불조심캠페인과 소방차 가두캠페인, 불조심포어·포스터, 유공자 표창과 같은 기념행사가 주로 이루어졌고, 지역단위로 월동기간에 불조심 계몽운동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그 후 세월이 경과하면서 1963년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 제정되었다.

2) 특별한 의미 결여

소방의 날은 소방과 유사한 기관들처럼 특별한 국가기념일이 아니고 전술한바와 같이 월동기간 중 대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확실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제시대에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행사들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치안국에서는 겨울철 화재기를 앞두고 각종화재예방에 힘쓰고자 10월 15-21까지 화재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당하여 국민의 방화사상을 함양시킴과 동시 합리적인 방화대책수립, 개선을 위해 일주일간을 「전국불조심강조주간」으로 설정한 것일 뿐 유사한 기관들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기념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기념일로서 설득력 부족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한국근현대사사전).

기념일이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 또는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하나 현행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도 아닌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일 뿐 만 아니라 기념일로서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건적인 의미로만 보더라도 기념일은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축하하거나 기릴만한 일이 있어야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소방의 날 제정 취지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람은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고, 소방과 유사한 기관들의 기념일들을 살펴보더라도 기념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행사의 일관성 불확실(부족)

소방의 날의 행사는 대체로 불조심강조기간 또는 불조심강조주간, 방화강조기간, 전국불조심강조의 달 등을 정하여 그 시작되는 첫날을 소방의 날 또는 불조심의 날 등으로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1991년부터는 11월 1일도 아니고 전화번호의 119와 같은 날로 하기위해 11월 9일로 제정했다는 것은 코미디수준의 날이며 더구나 국군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은 법정기념일도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서 가정의 날이나 태권도의 날 혹은 임산부의 날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10개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 중 하나에 불과한 날이라는 점도 차체에 변역되어야 할 것이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도록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소방의 날 변역 필요성에 대한 조정(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의 날은 유의미한 기념일도 아니며 많은 소방관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날이기도 하다. 즉 코미디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럴듯한 날일지는 모르겠으나 앞에서 누누이 진술한 바와 같이 기념일이란 진정한 기념일에 맞는 날이어야 한다.

즉 소방의 날이란 소방관계자들이 긍지와 자부심, 자존감 등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차체에 변역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19를 기억하기 위해 11월 9일로 제정했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119를 상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면 1월 19일도 119이므로 그 날은 어떻게 변명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방의 날 제 제정에 맞는 진정한 소방의 날의 변역 필요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소방의 날 변역 필요성에 따른 조정(안)

구분	변천과정	조정(안)		비고
소방의 날	12. 1 ↓ 11. 1 / 11. 2 ↓ 11. 9	1안	5월 3일(1895.5.3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날)	“수화(水火), 소방(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관계하는 구호에 관한사항”이라는 경무청 처무세칙 중에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행정자치부 소방국, 1999: 33)
		2안	2월 26일(1426년 금화도감 즉 소방관아가 처음 만들어진 날)	
		3안	6월 1일(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날)	
		4안	3월 11일(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처음 제정된 날)	

좀 더 부연하자면 제1안의 5월 3일은 우리역사상 소방이라는 용어가 1895년 처음 사용된 날(조동훈 외, 2012: 15)로서 의미가 있는 날이며, 제2안의 2월 26일은 1426년 금화도감 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아가 만들어진 날(조동훈 외, 2012: 14)로서 유의미하며, 제3안의 6월 1일은 2004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날이며, 마지막 3월 11일은 1958년 현행 소방법이 처음 제정된 날로서 의미가 있다할 수 있는 날 등으로서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이 있다.

상기와 같이 소방의 날에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화번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된 소방기관으로 또 세계적인 선진소방으로 비추어 볼 때도 소방의 날은 반드시 변역되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소방관계자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소방의 날 변역 필요성을 제안코자 한다.

1. 5월 3일(소방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날)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본은 소방사무를 보는 포도청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를 경찰사무에 병합하여 경무청을 설치하게 하고,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경찰과 소방은 내무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또한 그 당시에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 내에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청 직제에 의거하여 총무국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경무청처리계획 제정시 경무청 처무세[칙에서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홍수 등에 관계되는 구호에 관한 사항” 이라고 정했는데 여기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소방행정사, 1999: 33).

2. 2월 26일(소방관아가 처음 창설된 날)

한성부의 대화재를 계기로 1426. 2. 26일(세종 8년) 병조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는데 화재를 방지하는 독자적 관아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아라 할 수 있다. 금화도감의 구성은 제조 7명, 사 5명, 부사 및 판관 각각 6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금화도감에서 시행한 화재진압대책은 ①통금시간이 지나 불

을 끄는 사람에게 구화패(금화패)를 발급하였으며, ②화재를 진압할 때 군인을 병조해서 각 관하의 노비는 한성부에서 감독하였고 ③화재발생시 의금부가 종을 쳐 담당관원이나 군인에게 화재를 알리도록 하였다. ④인접한 가옥 사이에 방화장을 쌓고 ⑤요소에 우물을 파며 ⑥방화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총괄하였다. 그러나 금화도감은 애석하게도 설치된 지 4개월만인 1426년 6월에 성문도감과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한국소방행정사, 1999, 18-19). 수성금화도감의 구성은 공조 소속으로 제조4명 외에 사, 부사, 판관 각각 2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수성금화도감의 기능은 ①성을 수리하고 ②화재를 예방·진압하고 ③하천을 정비하고 ④길과 다리를 수리하였다.

3. 6월 1일(우리나라 최초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날)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업무로 하는 재난관리 전담기구다. 소방방재청의 전신은 1995년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됐던 민방위재난 통제본부다. 그러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후 복구에 주력하는 기관이었으며 민방위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난관리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후 2002년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그해 국정감사에서 재해와 재난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독립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정부는 독자적인 재난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는 국가 안전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간 안전지도사를 양성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주관하는 일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맡고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체계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4. 3월 11일(우리나라에 소방법이 처음 제정된 날)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와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로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때부터 정부수립 초기까지의 소방업무의 주된 내용은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화재진압보다는 화재예방 쪽으로 소방 활동의 중심점이 이동되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1952년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소방조사 규정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점진적인 화재예방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화재예방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고, 또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소방법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195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955년 7월에 소방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후 재차 상정하여 3년 뒤인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되었으며 24차례의 일부개정 및 전면개정을 거쳐 2003. 5. 29 폐지되었으며 현재 4분법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V. 결론

많은 기관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기념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11월 9일에는 불조심캠페인과 유공자표창 등 소방의 날 자축행사를 실시한다.

소방공무원과 같은 제복을 착용하는 군인, 경찰, 교도관 등 유사기관의 기념일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동기 및 일본, 미국, 로마, 유럽 등의 소방의 날 기념일은 어떠한 사유에서 제정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각 기관별·국가별 소방의 날 제정에는 그 기관·단체·국가별로 기념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와 동기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우리나라의 소방의 날은 단지 긴급전화번호가 119라는 이유만으로 그날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숙된 소방조직으로서 소방의 날 또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1895년 5월 3일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날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는 안과 둘째, 1426년 2월 6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현대식 소방관서인 금화도감의 창설일인 2월 26일로 제정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셋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날을 기념하는 6월 1일도 의미가 있으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로 제정하는 것 등으로 검토하여 가장 의미가 있는 날에 모든 소방관계자와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스포츠조선. 2007. 5. 11.
우성천. 2010. 소방행정학. 경기: 동화기술.
조동훈 외. 2012. 소방학개론. 경기: 신광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행정자치부 소방국. 1999. 한국소방행정사.

안전뉴스, 2012. 11. 9.

<http://www.st119.or.kr / 1/frame 2.htm>

<http://cafe.naver.com/jc0119/11>

<http://cbps1212.co.kr>

<http://www.kimjel19.com/inform.symbol.htm>

<http://m, news. naver.com>

禹性天: 경기도 소방학교 교학과장 및 서무과장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소방행정, 재난관리,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등이다. 최근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소방행정학(2010), 재난관리론(2010, 공저), 소방관계법규(2011, 공저)와 소방행정실무(2013), 소방행정법(2012)이 있고, 소방공무원 멘토링기능이 직무영향에 미치는 영향(2011),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 초고층건물의 효과적인 화재진압전술에 관한 연구(2013), 소방공무원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2012), 소방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영향요인분석(2012) 등이 있다(scwoo@kangwon.ac.kr).

蔡鎭: 현직소방공무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소방행정에 있어 재난관리효과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09), 현재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와 산업정보대학원에서 소방학과 재난관리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섭외이사, 한국정책개발학회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화재소방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관심분야는 재난관리정책, 소방행정분야이며 특히 유비쿼터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소방공무원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분석(2012), 소방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영향요인분석(2012),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연구(2011),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에 관한 질적연구(2011),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11), 등이 있다(korea119@gg.go.kr).

투 고 일: 2013년 08월 09일

수 정 일: 2013년 0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30일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Necessity of Firefighting Day's Alteration

Seoung Cheon Woo, Jin Chae

Anniversary means the day to remember and celebrate what should be congratulated or honored every year based on government's regulation about all kinds of anniversaries, etc. On the dates, each institution significantly improves meaning of the anniversaries and seeks new development and maturation by holding the anniversary event or other events. However, if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anniversary event for the 50th firefighting day on Nov. 09, 2012, we cannot help being doubtful if Nov. 09 is significant day as a firefighting da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shed new light on the time, reason and object of firefighting day historically, examine changes of firefighting day so that it can be significant day like all of national anniversaries(legal anniversaries) or firefighting day of other countries in spite of repenting of the missing a chance and suggest the necessity to alter firefighting day which is suitable for firefighting day firefighting officers can possess pride and rewarding by seeing the anniversary suitable for firefighting day and new firefighting day. For the enactment of firefighting day by each institution and each country, there are sufficiently objective reasons and motives which can celebrate by the institution and each country. But,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new firefighting day of matured firefighting organization should be altered to firstly the day to use the word of firefighting in our history, secondly the day when Korean firefighting organization(government office)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irdly the day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as inaugurated, etc. by indicating that our firefighting day was enacted by only the reason emergency number is 119.

Key words: Firefighting Day, regulations about all kinds of anniversaries, national anniversary